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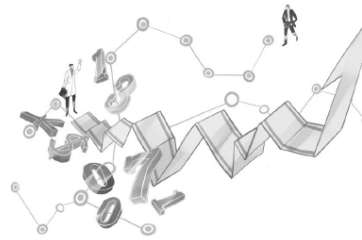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 국가 재정지표 세미나 발표 후기
-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 국가회계제도 동향
- 외국회계제도 동향
- 주요질의 회신 요약
-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공지사항





INDEX

- 국가 재정지표 세미나 발표 후기
-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 국가회계제도 동향
- 외국회계제도 동향
- 주요질의 회신 요약
-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공지사항



국가 재정지표 세미나 발표 후기

김은영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 02.3149.7564 / e-mail_ekim@kicpa.or.kr

01 개요

4월 29일 국가회계기준센터와 한국회계정보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춘계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국가회계기준의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회계제도 도입현황과 유용성 제고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의 발표에 이어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 분석에 대하여 발표를 맡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국가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전문가들과 공인회계사들이 참석하여 국가 회계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02 재정지표 개발 과정

2009년부터 정부부문에 새롭게 도입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인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회계제도 아래에서 국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표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이 이 세미나 발표의 주된 목적이었다.

재정지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 예산회계 중심의 국가 재정지표나 발생주의 회계를 먼저 도입한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재정지표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각종 재정지표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재정현안들을 고려하여 재정지표 기초 pool을 마련한 후에 실제 국가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인 국회, 정부부처 그리고 민간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31일에 걸쳐 재정지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진태호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52 / e-mail_redsplit@kicpa.or.kr

설문은 국가 재정지표 pool의 각 지표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부채나 이자비용 등 국가채무와 관련된 지표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로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정부부문과 공기업의 부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등의 국가자산과 원가나 비교환수의 등 재정운영부문에 대하여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국가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민간과 달라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직 홍보도 부족하여 좀 더 알기 쉽게 국가회계를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총부채 증감율, 국민 1인당 총부채, 총비용 대비 이자비용비율 등 14개의 국가 재정 지표와 부문별 원가 증감율, 총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 등 5개의 중앙관서 재정지표를 도출하였다.

03

재정지표 향후 과제

발표가 끝나고 경원대학교의 윤태화 교수의 사회로 한국회계기준원의 권성수 실장, 홍익대학교의 김경호 교수, 안진회계법인의 김철호 상무,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 충북대학교 이장희 교수, 기획재정부 이호연 보좌관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표 이용자가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지표 활용 목적에 보다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어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정지표가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건전성과 같은 특정 지표이용 목적별로 지표를 제공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좀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정지표를 보완한 후에 2010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지표를 산출하고 재무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 국가 결산보고서에 적용할 재정지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재정지표의 유용성 측면에서 성급한 지표 개발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또한, 현재 국가와 중앙관서에 대한 재정 지표만을 제시하였으나, 회계·기금 실체별 재정지표가 필요한지 여부나 성과 평가와 연계될 수 있는 재정운영분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01

부채 소위원회 개최(4.6)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연금회계처리지침과 보험 및 보증회계준칙 제정안 마련을 위한 부채소위원회(위원장 : 이경섭 서울 시민감사 옴부즈만)를 4월 6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과 각 기금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금총당부채의 범위와 인식 방법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갔으며 연금총당부채 인식 대상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차례의 T/F 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보험 및 보증회계준칙 제정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각 기금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3월에 실시한 T/F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02

연금회계처리지침 마련을 위한 T/F 회의 개최 (3.24 ~ 4.19)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발맞추어 공적연금사업의 연금 총당부채의 평가 및 공시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제정안 마련을 위하여 각 공적연금의 기금회계담당자와 연금공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3.4월에 걸쳐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연금총당부채에 인식되는 급여를 명확히 하고 총당부채 측정의 핵심이 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 방식 및 공시방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T/F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각 연금기금 간 협조를 위하여 별도로 기획재정부 회계 결산과 협의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의 국방부 방문(4.13) 등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였다.

T/F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례 및 결론도출근거 등을 포함한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제1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03 제4차 국회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개최(4.5)

국회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회회계기준 자문위원회가 4월 5일 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개정(안), 보험회계준칙 제정(안), 보증회계준칙 제정(안)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04 국회회계기준센터 춘계 워크숍(4.15)



국회회계기준센터는 지난 4월 15일 춘계워크숍으로 창의문에서 말바위(삼청동)를 잇는 북악산 서울 성곽길 산행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편호번호장이 함께 동행하며 그간 바쁘게만 일했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시작에 앞서 편호번호장은 “앞으로 국회회계에 굽직한 현안들이 남아있는 만큼 산행을 통해 지친 심신을 단련해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05 국회회계기준의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4.29)

국회회계기준센터는 국회회계기준의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4월 29일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회계제도 도입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권준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과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 분석(김은영 국회회계기준센터 연구원)이라는 두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회회계기준센터는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표가 담아야 할 내용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회회계기준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재정지표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도 결산보고서에 시범적으로 적용·분석한 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도 결산보고서에 적용할 재정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06 IPSAS 컨퍼런스 참석(5.19)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5.20)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은 ‘공공 부문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회계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5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회장, 주인기 CAPA 회장, 박재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Andreas Bergmann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이 참석하였으며, CAPA 23개 회원국 및 국내 공인회계사, 정부관계자, 학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이 세 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발생주의 도입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소개,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현금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제도간의 연계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인도네시아 참석자는 한국의 현금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제도간의 연계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등 한국의 도입사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컨퍼런스 다음날인 5월 20일에 국가회계기준센터와 CAPA는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하였으며, 전날 참석한 발표자와 주요 인사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발생주의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편호범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발생주의 국가회계기준의 해외적용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07 공공기관 결산 시스템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5.25)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5월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종덕 출자관리과장, 공공기관 회계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일정에 따라 생산될 재무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08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신규 채용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국가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 국제회계기준팀 등 정부회계연구를 수행할 연구원 5명을 신규채용 하였다.

이번 신규 채용에는 국내 및 해외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니고 회계법인 및 관련기관 등에서 수년간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대거 지원하여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신규 채용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에는 특히 정부회계에 대해 남다른 도전정신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채용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편호범 소장, 총괄팀장 등 연구원 20명, 행정 인력 2명 등 총 23명의 인력으로 운용된다.

09 2010년도 정부결산 지원(4~5월)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2010회계연도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50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친 후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통합, 국가통합결산조정분개 반영, 내부거래 제거 등을 수행하여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임정혁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_3149_7553 / e-mail_ rau438@kicpa.or.kr



01

국가회계·결산지원단 활동내역(4~5월)

각 중앙관서에 배치된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전문 인력은 중앙관서 결산 마감일자(3.31)에 따라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4월의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의 일정에 따라 국가통합에 관련된 후속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산 간 오류사례 등을 분석하여 오류의 유형과 오류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해당 오류들을 분석하여 오류사례집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결산지원단 전문 인력은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서 재무결산의 인식 제고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강의지원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 사업을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부처별 검토 자료와 이슈 사항을 지원단 전문 인력에게 제공하여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의 활동은 5월 31일 마무리되고 6월 10일 한국공인 회계사회 5층 대강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 회계결산과장 및 박길호 국가회계·결산지원단 단장 등 관련 인사들과 업무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02

기획재정부 제1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4.26)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부차관)가 4월 26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제정안, 연금회계준칙 제정안,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 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을 하였다.

• 연금회계준칙 및 연금회계평가 및 공시지침(안) 의결

3월 11일 제1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주문받는 연금회계준칙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총당부채의 인식과 평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부채소위에서 재심의를 거쳐 제1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의 의결되었다. 한편, 연금회계평가 및 공시지침의 경우 연금총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관련 실 회계처리의 사례를 추가한 것 등이 호평을 받으며 연금회계준칙과 마찬가지로 심의 의결되었다.

•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안) 의결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지침(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 할 경우,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재평가 대상 자산, 측정기준 등 재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자산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며, 측정기준은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자산재평가 회계처리는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액을 “자산재평가이익” 계정 과목으로 순자산에 반영하고, 장부금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손실”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손은하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59 / e-mail_ ehshon@kicpa.or.kr



0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의 동향

IPSASB, 공개초안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주요 특징” 발표

(토론토/2011년 4월 29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공개초안(ED)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주요 특징(Key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Sector with Potenti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porting)”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동 공개초안은 공공부문기관 및 기준 제정을 위한 개념체계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사항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부문기관은 그 존속을 위해 상업적으로 창출되는 이익보다는 세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진을 보유한 입법기구가 포함되는 지배구조 약정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 공개초안은 공공부문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민간부문(비영리기관 포함)에서의 재무보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및 그 밖의 다른 공공부문기관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민간부문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재무상 유의적인 비교환거래가 다수 존재한다.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유출을 비롯해, 세금 및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이전에 따른 유입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동 공개초안은 민간부문의 거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다수의 거래가 공공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두 부문 간의 회계처리가 서로 다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동 공개초안은 많은 국가에서의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법규의 준수를 보여주는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역할을 종종 수행한다.

02. 미국공공부문회계동향

AAPC, 결산총평(MD&A)에 대한 모범사례 보고서 발행

2011년 5월 19일, 회계 및 감사 정책위원회(AAPC)의 의장 Wendy Payne은 AAPC의 “결산총평에 대한 모범 사례 보고서(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Best Practices Report)” 발행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결산총평(MD&A)의 작성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참고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상기 AAPC 의장은 “기관 보고서의 결산총평은 각 실체의 주요 업무 및 추진활동, 성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매년 재무보고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동 보고서가 유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방보고서의 MD&A가 기관의 성과 및 재무 결과를 효과적으로 요약,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유의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동 모범사례 보고서는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가 설립한 연구그룹에서 MD&A 기준서 검토작업 후 뒤이어 작성되었다. 연구그룹은 현행 기준서 및 개념서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모범사례 파악이 유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FASAB은 AAPC에 기관 보고서에서 발견한 모범사례를 선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APC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고, AAPC 위원이자, 미국 관리예산처(OMB) Deputy Controller의 수석 자문역인 Regina Kearney가 자신하여 관련 연구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2009 회계연도 MD&A를 검토하고 현행 기준서, 개념서 및 OMB Circular A-136과 일관되는 모범사례를 파악하였다. MD&A 모범사례는 세부지침(technical releases)이 아닌 AAPC 보고서에 작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GAAP을 구성하지 않으며 실무적용지침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동 보고서는 <http://www.fasab.gov/report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질의회신 요약

임정혁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3149.7553 / e-mail_rau438@kicpa.or.kr



주요 유선질의 회신1 (유산자산취득비) 계정과목에 대한 해설



어떠한 경우에 [유산자산취득비] 계정과목이 나타나는지 문의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및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청사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거나 구입 및 기증받은 예술품 중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외에는 [유산자산취득비]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됨

주요 유선질의 회신2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이자율 변동으로 리스료가 변하는 경우 리스료 증감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금융 및 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리스료의 변동금액이 중요하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변동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등]의 계정과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이자비용 인식분과 원금 상환분으로 분리하여 [금융리스이자비용]과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상환 금액으로 처리함

주요 유선질의 회신3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상수도의 범위



상수도 수리에 소요된 공사비를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상수도는 수도법 상 광역상수도를 뜻하므로 공사 대상인 상수도가 수도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참고로 현 지침 상 사회기반시설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만 존재함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박보희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57 / e-mail_cpabo@kicpa.or.kr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

01

머리말

국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 산출을 목적으로 '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하 "발생주의회계제도")가 국가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도입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제도 하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범위 및 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44조에서 연금충당부채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현재 부칙에서 이를 유예한 상태이다.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이하 "공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평가를 위한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와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식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02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1 공적연금제도

가.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공적 연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기여금 또는 조세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연금제공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은 크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나.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및 관련 법령

*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및 관련 법조문 비교 *

구 분	관리주체	운영주체	대 상	근거법률	국가부담여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8~60세 국민 및 거주외국민	국민연금법	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제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4조①) 법 제87조 (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각 법에 따른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법 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69조①, 69조②)
군인연금	국방부	국방부	복무군인	군인연금법	법 제39조 (보전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39조②)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연금공단	각 법에 규정된 학교기관의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 제53조 (국가의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53조의⑦)

②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

가.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1) 현재의 의무

부채의 정의는 국가회계실체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미래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 지급원인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2)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부채는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국가회계실체는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을 통해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국가회계실체가 기금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약정된 급여를 보장한다면 기금의 운용성과가 나쁠 경우 당초 기여금 외에 향후 추가적 현금유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 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이 충족된다.

(3) 신뢰성 있는 측정

부채의 인식은 미래 지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은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사용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란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연금액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며, 대상자를 집단으로 묶어 가정을 적용한다면 신뢰성 있는 가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검토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에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국민연금의 관리체로서 연금가입자의 기여금 등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권자의 확정 연금채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가 없으므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 의무라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성격이 연금 지급 재원 부족 등에 대해 국가 보전 의무가 없으므로 국가회계실체의 연금 급여 지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연금제정의 균형을 위해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이 타 연금에 비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연금 지급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다.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체로서 피고용자인 공무원 또는 군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연금 등의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수급조건(공무원연금: 20년 이상 가입 및 65세 이상, 군인연금: 20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이 지급되므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보전외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은 국가회계실체가 연금의 관리실체이며 교직원의 직접적인 고용주체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학교 법인에 존재한다. 다만 교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연금의 업무를 국가회계실체인 기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과 국가회계실체간의 고용대가성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의 의무 관점에서 국가회계실체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출가능성 관점에서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체가 아니나 연금 지급 재원 부족에 대한 국가회계실체의 보전의무가 임의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뢰성 있는 측정의 관점에서 사학연금에 대해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므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공적연금 부채 인식요건 검토

판단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현재의 의무	미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경제적 효의 유출의 높은 발생가능성	미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신뢰성 있는 측정	미충족	충족	충족	충족
연금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	○	○	×

03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1 퇴직연금제도

가.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또는 그 이후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퇴직이후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주는 미래의 퇴직급여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당해 기금은 별도의 실체로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제도자산을 투자·관리함으로써 퇴직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나. 퇴직연금제도의 분류

(1)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일정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된 기여금을 기금에 납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산정된 기여금에 대한 납부책임만을 부담하며 종업원에게 궁극적으로 지급될 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 종업원이 궁극적으로 지급받게 될 급여는 기여금납부액 및 기금의 누적이익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금납부액은 독립된 재산의 실체인 기금관리자에게 인계되는데 기금관리자는 수익자, 즉 제도 가입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관리자는 제도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투자와 급여지급의 책무를 가지며 기금은 고용주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실체이다.

(2)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확정기여제도와 상반되게 종업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게 될 급여가 정의된다.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어떠한 기금적립방식이 채택되든지 간에 해당 기금은 당초 정의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기금의 수익자가 되는 반면, 확정급여제도에에서는 고용주가 기금의 수익자가 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주는 당초 정의된 확정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기금자산이 부족하다면 고용주가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기금에 잉여 자산이 있다면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기금환수를 통해 고용주가 이를 되찾을 수 있다.

다.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제도(DB형)

국가회계실체의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분류하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기금의 운용주체, ②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 ③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 부담주체로 볼 수 있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기금의 운용주체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와 분리된 독립 외부 실체이다. 국가회계 기준상 연금제도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는 내부 기금에서 운용되므로 기금운용주체 측면에서 볼 때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연금충당부채의 계상 대상이 되는 연금의 경우 연금재원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한 보전의무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한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회계실체는 연금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에 대한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 제도이다.

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인 보험수리적 위험과 기여금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위험에 대한 부담 주체는 국가회계실체이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로 판단해본 결과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재정상태표상 연금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채무란 재정상태표일까지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급여에 대해 의무를 지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채무의 개념

가. 연금채무의 개념

연금채무의 개념은 계산대상범위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수급권자에 대해서인지, 연금제도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금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급여수준이 현재 급여 수준인지 미래 급여상승효과를 예측하여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연금채무의 크기가 달라진다. 연금채무의 개념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보장급여채무(VBO : Vested Benefits Obl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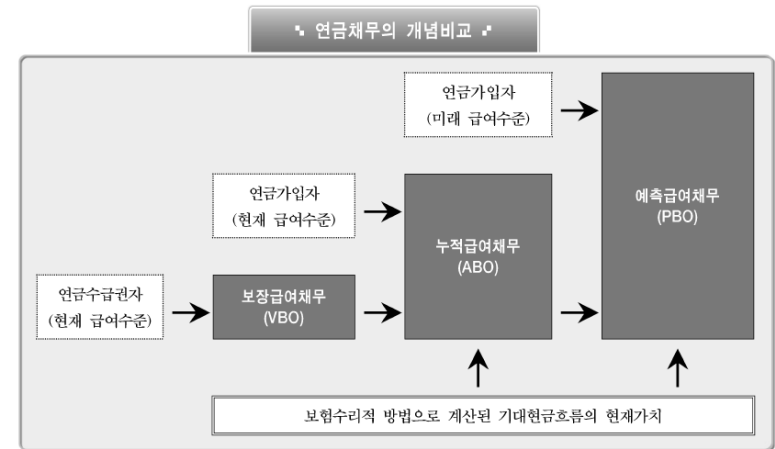
- 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연금가입자에 대한 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 장점: 다른 대안보다 가정이 적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 단점: 연금제도 종료의 가치가 고용주의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현재시점의 채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님

□ 누적급여채무(ABO :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 연금을 받을 권리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가입자의 현재의 소득수준을 기초로 산정한 미래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 장점: 연금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회계상의 부채로 타당할 수 있음
- 단점: 현재 급여수준을 이용하여 계산된 퇴직시점의 급여의 현재가치를 채무로 계상함으로써 인한 측정상의 왜곡이 발생함

□ 예측급여채무(PBO :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 연금을 받을 권리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가입자의 급여 상승예상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미래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충당부채로 산정
- 장점: 정부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여 최종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목표액을 채무액의 개념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며 미래의 자원유출예상액에 미래의 급여수준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
- 단점: 미래의 급여수준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나.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채무의 개념: 예측급여채무(PBO)

연금채무의 개념 선택은 발생주의 도입에 따른 것이므로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 특성과 국가회계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적용대상의 경우 국가회계실체에 계속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종료로 가정을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연금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임금수준은 부채의 정의를 고려하여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예상액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측급여채무의 경우 계속성에 대한 가정이 국가회계실체에 부합하며, 미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하므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라는 부채의 정의에 보다 부합한다.

3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가. 연금채무 및 표준보험료

연금채무의 개념을 채택하고 나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채무란 연금수급권자 및 연금가입자에 대한 과거 근무용역에 대해 고용주가 퇴직 후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금액이며 표준보험료란 연금채무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중 평가연도에 배정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채무와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를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충당부채를 기도입한 해외사채 등을 검토한 결과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발생급여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과 예측급여평가방식인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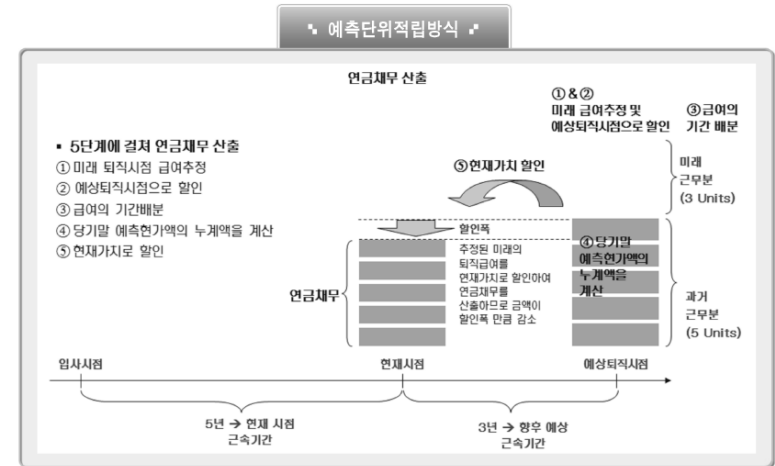
나. 보험수리적 평가방식

(1)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은 연금채무의 개념을 예측급여채무(PBO)로 채택하고 예측급여를 근무연수로 나는 방법으로 연금채무를 산정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종업원의 현재까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무기간에 대한 예측급여 총액을 추정하고, ②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예측급여총액의 현재가치를 구한 다음, ③퇴직시점의 예측급여 현재가치를 전체근무기간의 각 연도에 배분하고, ④당기 말까지의 기간에 배분된 예측급여현재가치의 누계액을 계산하며, ⑤ ④의 누계액을 당기 말 기준의 현재가치로 재환산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한다.

예측단위적립방식(급여/근무연수방식)은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연금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계산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연금채무가 산출되고 연금채무의 당기 현재가치 변동액이 표준보험료(당기근무원가)가 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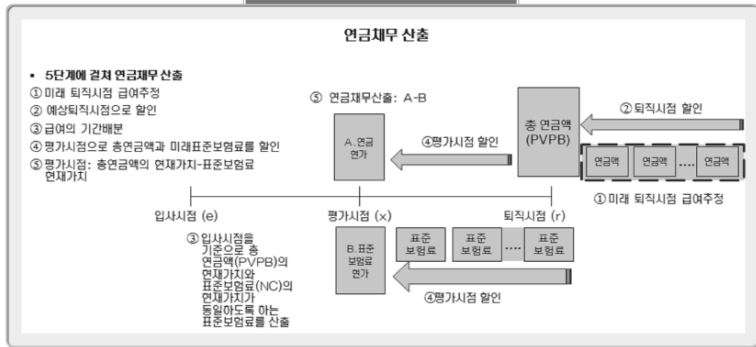
예측단위적립방식은 일정 적립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으로 적립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의 수급권 보장에 있어서 더 우월한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 지급할 연금채무의 대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로 인식하게 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무용역제공과 연금의 지급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방법이다.

(2)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ntry Age Normal Cost Method)

예측급여평가방식은 종업원의 미래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무기간에 걸쳐 각 근무기간의 근무원가가 균등하게 보수(임금)에 대한 근무원가의 비율이 일정하게 퇴직시점의 예측급여현재가액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 기간의 근무원가가 평준화된다. 예측급여평가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ANCM)이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연금채무를 산출과정에서 표준보험료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연금채무의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과는 이러한 점이 차이가 발생한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에서는 연금채무는 총 연금액의 평가시점 현재가치에서 미래표준보험료 누계액의 평가시점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보험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담금을 유지 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비교해보면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은 산출방법의 기본이 보험의 수지상등 원칙에 기초를 둔 방법으로 보험계리적 관점에서 더 우월한 방법이다. 또한 각 기간 표준보험료가 동일하므로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비해 초기에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04 결론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연금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되는 연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주인 국가가 퇴직 후 보상할 연금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제도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률적으로 연금재원 부족 시 국가가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OECD 가입국들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가 없어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학연금의 경우 국가회계실체가 사학연금의 관리실체로서 교직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연금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연금재원 부족 시 보전의무가 법률 상 임의규정으로 존재하므로 연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현재의 의무 및 높은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연금채무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적합한 연금채무의 개념은 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부합하는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의 대상은 국가회계실체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연금충당부채 금액은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급여상승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개념이므로 국가회계기준상 연금충당부채의 개념은 예측급여채무(PBO)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은 대표적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의 개념, 사례 및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국제적 회계 정합성, 발생주의 회계원칙, 부채의 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각 방법을 검토한 결과 보다 국제적 회계 정합성을 고려하고,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부채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방식은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한 부채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운영의 계속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식공시사항 및 필수보충정보 제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 공지사항

김상노 _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Tel_02,3149,7551 / e-mail_alcaz@kicpa.or.kr



07 국가회계저널 발간을 위한 논문 공모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다음과 같이 국가회계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1. 공모 주제

-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 국가재무제표 활용 방안(프로그램 원가 산출을 통하여 예산에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 필요)

2. 응모자격

- 제한 없음

3. 응모기간

- 2011. 5. 16 ~ 6. 10 (금)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참조

08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창립 1주년(창립일 2010년 7월 26일)을 맞이하여 국가회계와 관련된 정부, 학계, 회계업계 전문가 등을 모시고 7월 22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될 내용은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 1년 활동 내역 보고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가회계기준 발전방향 및 정부회계 저널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http://www.nasc.or.kr>)로 세미나 참석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09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02.3149.7560 Fax_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11년 5월 31일 발행